

—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—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사용허가시 관장의 재량범위를 최대한 제한
-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신설, 폐지 및 현실화
- 영화 및 흥행성 대중공연 유료공연시 사용료 및 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 보장
- 회관 유료기획 공연 관람권의 잔표 관리방법 개선

3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(제3조제2항제3호)
 -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
⇒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, 전시 및 행사
- 부대시설사용료 신설, 삭제 및 현실화(제5조제1항【별표】)
 - 항 목 : 총 23종 ⇒ 28종 (신설 9종, 삭제 4종)
 - 현 실 화 : 음향반사판외 3종
 - 부대조건 : 신설(5), 삭제(2), 변경(1)
- 영화 및 흥행성(오락적인 쇼,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)이 있는 유료공연의 사용료 인하 및 징수 보장(제5조제2항)
 - 사용료 :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30
⇒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

- 사용료 징수 보장 신설 :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사용종료후 정산 납부
- 보증금 신설(제8조제1항) : 제5조제1항의 사용료 산출금액
-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관리(제11조제5항) : 소각 ⇒ 5년간 보관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3조, 제5조, 제8조,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연장 사용허가의 범위, 부대시설사용료 및 흥행성 유료공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관리와 보증금신설 등 회관운영에 따른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